

발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

1. 관리번호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2.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래 대리발급 신청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3. 신청 가능한 자격증 서식은 수탁기관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다만, 별지 제12호 서식은 전파전자통신기사·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4. 2005년 9월 이전 자격취득자, 인정발급* 대상자, 검정시험 완전면제자**,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검정 최종 합격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7조에 따라 구축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사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인정발급이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0조제1항 및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라 개별법령에 따른 자격취득자에게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** 검정시험 완전면제자란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13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 완전면제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대리발급 신청

자격증 대리 발급 신청으로 인하여 자격 취득자 또는 귀 기관이나 제3자에게 누를 끼칠 때에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성명	
주민등록번호	
주소	
전화번호	